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340호

## 2026년도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AI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우수인재 및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http://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2026년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 '협약체결 약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 사업개요

**사업목적** : AI를 활용하여 현안해결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정부 AI 양성과정 수료생을 매칭·채용,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딥테크 5대 분야\*의 창업기업(초기(3년 이내), 도약(3~7년 이내\*\*))으로서, 중앙정부 AI 양성과정\*\*\* 수료자('23~'25년 수료) 채용 예정인 기업

※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 지원사업 목록(붙임4)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미만까지 신청 가능

\*\*\* AI 교육프로그램 : (붙임 6)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스쿨, 중기부), (붙임 7) K-디지털 트레이닝(노동부), (붙임 8) 폴리텍 하이테크(노동부)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내외 ('26.10월 ~ '27.4월 예정)

\* 협약기간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8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1.3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창업프로그램

**2**

**세부지원내용**

구분	지원 세부 내용																		
<b>사업화 자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li> <li>** 정부지원사업비는 K-Startup 시스템 등록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li> </ul> </li> <li>•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부담사업비는 사업장 소재지(본점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지방우대 지역 구분은 [붙임 5] 참조</li> <li>* [붙임 5]에 미해당하는 지역은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으로 분류</li> <li>* 정부지원사업비 확정 및 지방우대 지역 확인 결과에 따라 자기부담사업비 및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사업장 본점 소재지 기준) &gt;</p> <table border="1" data-bbox="351 1646 1388 196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구분</th> <th colspan="3" style="width: 70%;">지방우대 지역</th> <th rowspan="2" style="width: 15%;">지방우대 비해당 지역</th> </tr> <tr> <th style="width: 20%;">특별지원 지역</th> <th style="width: 20%;">우대지원 지역</th> <th style="width: 30%;">일반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자기부담사업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b>10% 이상</b></td> <td style="text-align: center;"><b>20% 이상</b></td> <td style="text-align: center;"><b>25% 이상</b></td> <td style="text-align: center;"><b>30% 이상</b></td> </tr> <tr> <td>정부지원사업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9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8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0%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지방우대 지역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	자기부담사업비	<b>10% 이상</b>	<b>20% 이상</b>	<b>25% 이상</b>	<b>30% 이상</b>	정부지원사업비	90% 이하	80% 이하	75% 이하	70% 이하
구분	지방우대 지역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																
자기부담사업비	<b>10% 이상</b>	<b>20% 이상</b>	<b>25% 이상</b>	<b>30% 이상</b>															
정부지원사업비	90% 이하	80% 이하	75% 이하	70% 이하															

< 총사업비 구성 >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특별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9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우대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8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하
일반지역	100%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5% 이하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1.5억원 기준) >

구분	총사업비 (A=B+C)	정부지원 사업비(B)	자기부담사업비(C)*	
			현금	현물
특별지원 지역	166,670천원 (100%)	150,000천원 (90%)	16,670천원 (10%)	
우대지원 지역	187,500천원 (100%)	150,000천원 (80%)	18,750천원 (10%)	18,750천원 (10%)
일반지역	200,000천원 (100%)	150,000천원 (75%)	20,000천원 (10%)	30,000천원 (15%)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214,290천원 (100%)	150,000천원 (70%)	21,440천원 (10%)	42,850천원 (20%)

<b>매칭데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 기업과 AI 수료생 간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운영 (온·오프라인 병행)</li> </ul>
-------------	---

<b>창업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초기창업패키지 지원 프로그램</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유형</th> <th>프로그램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① 시장진입</td> <td>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글로벌 연계</td> </tr> <tr> <td>② 투자유치</td> <td>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IR 등 투자유치 지원</td> </tr> <tr> <td>③ 실증 검증</td> <td>멘토링, 기술 실증 등 실증·검증 지원</td> </tr> <tr> <td>④ 자유프로그램</td> <td>주관기관이 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역량을 투입하는 기관별 맞춤형 자유프로그램</td> </tr> </tbody> </table>	유형	프로그램 예시	① 시장진입	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글로벌 연계	② 투자유치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IR 등 투자유치 지원	③ 실증 검증	멘토링, 기술 실증 등 실증·검증 지원	④ 자유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역량을 투입하는 기관별 맞춤형 자유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예시									
	① 시장진입	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글로벌 연계									
	② 투자유치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IR 등 투자유치 지원									
	③ 실증 검증	멘토링, 기술 실증 등 실증·검증 지원									
	④ 자유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역량을 투입하는 기관별 맞춤형 자유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창업도약패키지 지원 프로그램</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필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후속투자 유치</td> <td>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글로벌 시장 진출·확대</td> <td>글로벌 IR, 실증검증, 해외 투자유치 등 진출을 위한 준비 지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자유프로그램</td> <td>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필수	후속투자 유치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글로벌 IR, 실증검증, 해외 투자유치 등 진출을 위한 준비 지원	자유프로그램	
구분		세부내용									
필수	후속투자 유치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글로벌 IR, 실증검증, 해외 투자유치 등 진출을 위한 준비 지원									
자유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b>후속지원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li> <li>*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li> </ul>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

## &lt; 신청 자격 세부 조건 &gt;

## ① 신청가능 업력

- (초기) 2023.5.18. ~ 2026.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도약) 2019.5.18. ~ 2023.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신산업 분야 : 2016.5.18. ~ 2023.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 보유 시,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함 ([붙임 1]참고,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 신청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반드시 확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② AI 인재채용 의무 : 창업기업은 후보기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AI 교육 수료 인재를 채용해야 함(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증빙 필수)
-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계획 內 채용계획(채용인원수, 채용유형 등 포함) 미이행시 시 선정 취소

##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붙임3-1]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⑥ [붙임 3-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⑦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4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⑨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⑩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⑪ 2026년 해당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4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5.18.(월) ~ 6.12.(금) 18: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8:00 정각에 마감**,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한 기업만 평가 참여 가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 클릭 시 최종 접수 완료**
-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접수 마감 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일체 **수정·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 완료 필수(사전 회원가입 및 실명 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4]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 ①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 타인 신청 시 탈락 처리**
- ② 사업 신청 시 초기 및 도약 창업기업에 따라 주관기관 1곳 선택 필수(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평가, 사업비 관리, 창업 프로그램 등 제공
  - \*\* 사업계획서의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상이한 경우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 첨부 양식 사용 필수. 다른 양식 제출 시 평가 제외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증빙 서류 제출 목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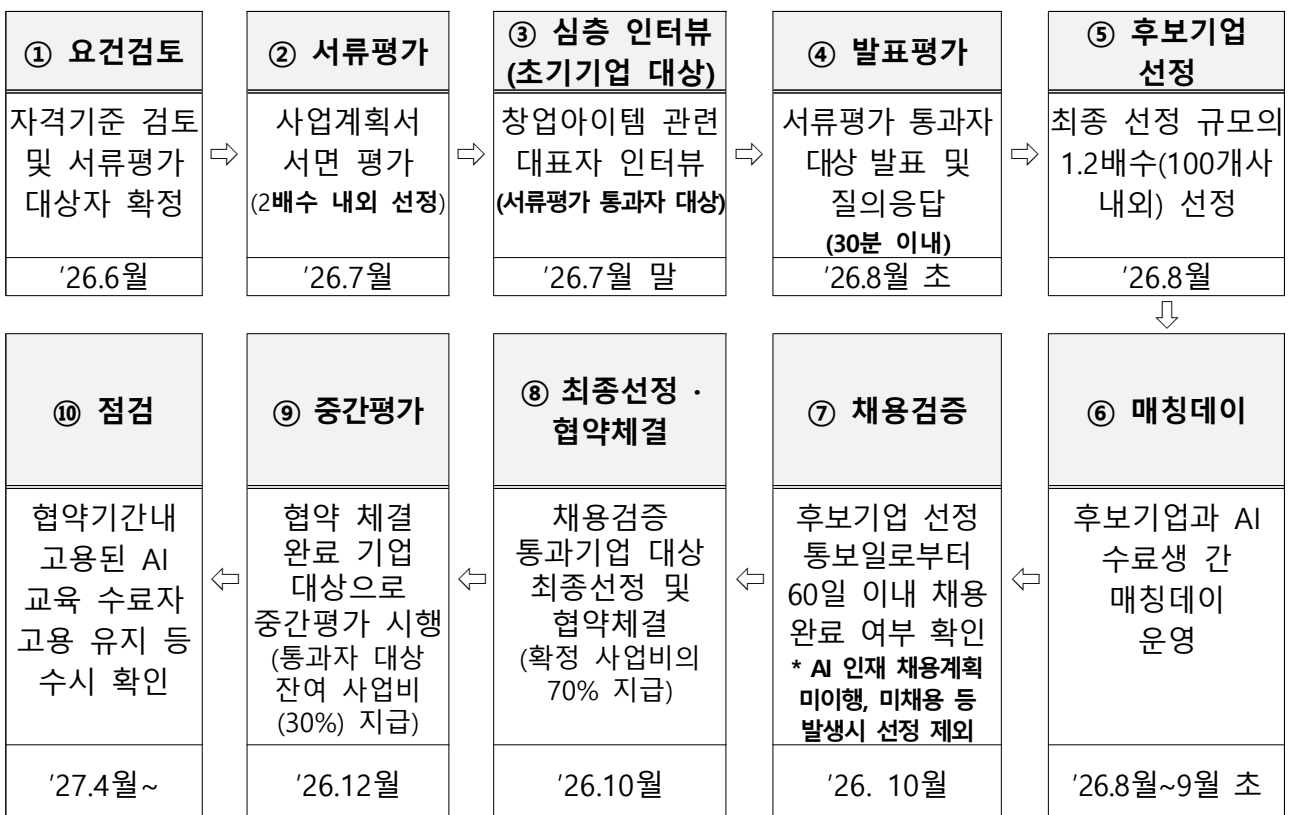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모집공고 첨부양식 사용) * AI 인재 활용 현안 해결계획 포함(2P 이내)	파일 첨부 * 용량 제한 30MB	총 15p 내외 분량 준수 (첨부양식 외 양식은 작성 불가)
③ (해당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출력	'미동의' 시 별도 (첨부)제출 (별첨 2 참고)
④ 신분 확인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명		

\* 대내외 사정에 따라 서류(행정정보) 수집 중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신청·평가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절차** : 서류평가 → 심층인터뷰(초기창업패키지만 적용) → 발표평가 → 후보기업 선정 → 채용검증 → 최종선정 순으로 진행

\* 선정평가 일정 및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신청자(기업)에게 별도 안내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최종 선정규모의 1.2배수를 후보기업으로 선정하며, AI 교육 수료자 채용 여부 확인 후 최종 선정. 후보기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AI 인재 채용 계획(사업계획서) 미이행 또는 미채용 시 선정에서 제외
- ※ 요건검토 및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면 선정·협약이 취소
- ※ 협약 체결 3개월 시점에 과제 진척도, AI 인재 활용 성과 등을 기준으로 중간평가를 실시. 통과 기업에 한해 잔여 사업비 30%를 지급하며, 미통과 시 지급 불가

## □ 평가 방법

-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을 검토
- ② (서류평가)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후 심층 인터뷰(초기 창업패키지만 적용) 및 발표평가 대상자를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기업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자격 위배 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
  -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 필요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③ (심층 인터뷰)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우수성 및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검증(초기창업패키지만 적용)
  - \* 대표자(신청자) 참석 원칙, 30분 이내 현장 진행, 인터뷰 결과는 발표평가지 참고 자료로 활용 예정
  - \*\* 불참 시 발표평가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④ (발표평가) 제품·서비스 개발 필요성, 시장진입 전략, 대표자 역량, AI도입 또는 AI 인재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대표자(신청자) 참석 원칙, 30분 이내(발표 15~20분 + 질의응답) 대면 진행
  -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해당시
  - \*\*\* AI 인재 채용 계획에 따른 가점은 "발표평가"에만 적용하며, 채용계획 등 미이행 적발시 사업 중단, 환수, 제재 조치 등 발생 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채용 유형별 가점 기준 >

채용 유형	가점
정규직 채용	10점
계약직 2명 이상 채용	5점
계약직 1명 채용	없음

\*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채용검증 시 미이행 사항 발견 즉시 최종선정 제외

⑤ (후보기업 선정)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후보기업을 선정(100개사 내외, 1.2배수)

\* 매칭데이 참여 자격 부여이며 최종 선정은 아님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진흥원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역량이 사업 운영목적·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⑥ (매칭데이) 후보기업과 AI 교육 수료생 간 양방향 매칭 진행(오프라인 채용박람회 온라인 채용플랫폼 병행)

⑦ (채용검증) 후보기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채용 완료 여부를 확인

\* 근로계약서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필수, 채용 계획 미이행(미채용) 시 최종 선정 제외

\*\* 단, 후보기업이 요건에 맞는 AI교육 수료생 자체 채용 가능

⑧ (최종 선정) 채용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자를 확정

- 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 대상 협약 체결 및 확정 사업비의 70%를 지급 예정

\*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휴일 불산입) 협약체결 약속서 제출 필수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 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디테크 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패키지(예비, 초기, 도약),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TIPS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화 ALL-In-One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 단,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디테크 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창업패키지(예비, 초기, 도약),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TIPS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화 ALL-In-One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⑨ (중간평가) 협약 체결 3개월 시점에 중간평가를 시행하며, 결과에 따라 잔여 사업비(30%) 지급 여부를 결정

- \* AI 인재 채용 계획 관련 가점은 발표평가에만 적용. 채용 계획 미이행 적발 시 사업 중단, 환수, 제재 조치 가능
- \* 고용상태 유지는 필수. 단, 퇴사 등 발생 시 퇴사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재고용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사업중단 및 환수 등 조치

**□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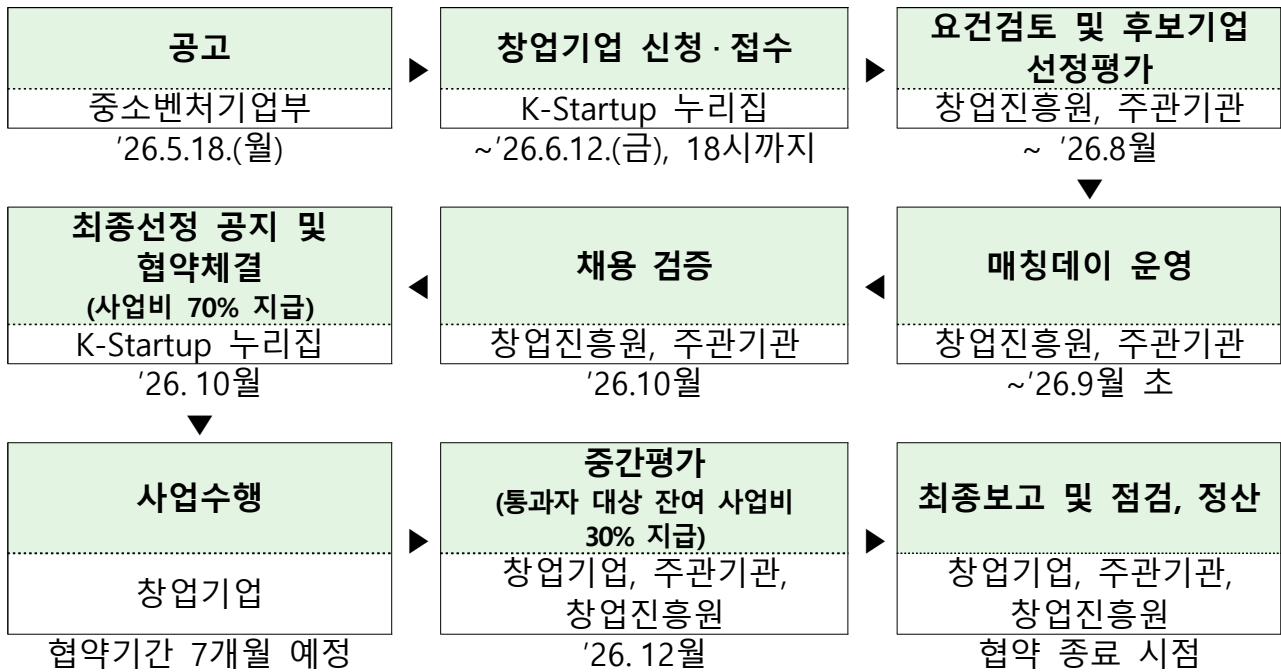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AI 인재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창업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창업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등
성장전략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대표자 및 고용 예정 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
AI 인재 활용 계획	AI 도입의 필요성, AI 인재 채용 계획, AI 전문인력 활용 방안 등

\*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④ 중소기업부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해당시
  -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해당시
  -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해당시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자(신청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신청기업)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시
- 대표자 사망·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 외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기업 대상)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하며, 미이행 시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 제한 조치
- 선정자는 AI 인재 채용 계획 및 협약기간 동안 근무 유지를 이행하여야 함
  - 인력 변동 발생(퇴사 등) 시 60일 이내 대체 인력 고용 필수(60일 경과 후에도 대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사업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채용기간 미달 및 미이행 등에 따른 환수기준은 '채용기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단, 퇴사일을 기준으로 채용기간 적용)

- \* 채용기간비율 기준 환수금액 : 총 정부지원금 X 채용기간(일수) / 사업기간(일수)
- \* 집행잔액과 채용기간비율기준 환수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금액으로 환수를 실시하며, 기타 제재기준(사업비 유용, 휴폐업 등)에 따라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 등도 가능함

## 7 기타사항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2023.5.18. ~ 2026.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구분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초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31
		042-385-0587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75
		031-780-9087

-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창업 3~7년 이내 도약기업, 2019.5.18. ~ 2023.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 (신산업 분야 : 2016.5.18. ~ 2023.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구분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도약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49-9902
		02-798-9319
		02-749-9306

<b>붙임 1</b>	<b>창업 여부 기준표</b>
-------------	------------------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http://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붙임 3-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횟수 제한 사업 목록**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도약패키지
- 생애최초 청년창업 ('23, '24)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23, '24)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4)
- 창업중심대학

## 붙임 3-2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 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2023.5.18. ~ 2026.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 초기창업패키지 (실험실특화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

\* 단,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창업사관학교)

-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레전드50+, 실험실특화형, 딥테크특화)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3~7년 이내 도약기업, 2019.5.18. ~ 2023.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 창업도약패키지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예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로 지원받은 자(기업)도 신청 불가

\* 단,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

## 붙임 4

##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5	· 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6	·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7	·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8	· 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9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10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11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2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3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4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5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6	· 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7	·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8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19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0	·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2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3	·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	·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	·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6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7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0	·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1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2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3	·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4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5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6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7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붙임 5**
**2026년 지방 우대 지역 분류**

구분	인구감소지역(84개)	
	특별지원(40개)	우대지원(44개)
참고	창업기업 자부담율 10%	창업기업 자부담률 20%
서울	-	-
부산	-	-
대구	-	군위군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제주	-	-

\*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자부담률 25%

**붙임 6**

**(중기부)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스쿨)**

□ 목적

-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 인공지능 실무인력 양성 및 취·창업 연계를 통한 청년인재와 스타트업간 미스매치 해소

※ 새정부 국정과제(89-1-2)

▶ (AI 청년인재) 인공지능 분야 청년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스타트업 취업 및 창업 연계 지원(年 200명)

□ 사업내용

- (예산규모) 2,300백만원('25년) → 2,900백만원('26년)
- (교육대상) 39세 이하 청년(학력·전공 무관) 200명
- (교육기간) 9개월(3~11월), 하루 8시간(주 5일)
- (교육방식) 대면(현장)·비대면(온라인) 방식 병행
- (교육과정) IT·AI 등 기초 이론 교육 및 기업과 연계한 실전 프로젝트 등을 단기간(9개월)에 교육하여 기업에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인재로 양성

〈 이어드림 스쿨 교육과정 〉



- (취·창업 연계) 졸업생·교육생과 AI 스타트업 간 취업 연계(인턴십, 창업사관학교 협업 등) 및 창업 역량 강화 지원(창업교육, 멘토링 등)

## 붙임 7 (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 **사업목적** : KT·삼성 등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서울대·성균관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 신기술\*을 배우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과정 제공
    - \*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소재부품, 로봇·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
- **훈련과정 특징** : 훈련기관과 기업이 훈련과정을 함께 설계하거나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실제 인력 수요를 반영
-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전액지원** (최초 참여 限)
  - 훈련수당 월 최대 31.6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특별훈련수당 20만원)
- **주요 훈련과정** (훈련기간 6개월)
  - (일반과정) 훈련기관이 디지털 분야 참여기업과 훈련과정을 설계
  - (혁신과정) 훈련기관이 '고성과 맞춤형 훈련과정' 심사\*를 별도로 통과하는 경우 '혁신훈련기관'으로 인정하고 고단가 지급
    - \*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 인프라수준, 자체 학습데이터관리시스템 마련 여부 등
  - (선도기업형) 선도기업이 주도적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
  - (대학주도형)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교수진과 우수 인프리를 활용해 훈련 운영

## 붙임 8

## [노동부]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 **사업개요** : IT, 첨단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는 청년층이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청년은 부족  
→ 미취업 청년 대상 신산업 분야 고수준 직업 훈련과정 확대
- **추진현황**
  - (대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2년제 대학이상 졸업(예정)자, 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관련 산업체 2년이상 경력자
  - (훈련분야) AI,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 분야
  - (훈련특징) 산업현장 니즈를 반영하여 현장인재 신속 양성
    - 신산업 기술 활용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 니즈 반영
      - \* 예시) 바이오 분야 : 서울대병원 등, SW분야 (주)하나은행, (주)투비소프트 등
    - 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듈식 프로그램 운영 및 고급 훈련 장비 구축
      - \* 고성능 오비트랩 질량분석기, 스마트 팩토리 실습장비 등
    - 주당 40시간 내외 교육훈련시간을 편성(10개월간 1,300시간), 약 2년이 소요되는 교육 훈련과정을 1년으로 단축

**붙임 9**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창업진흥원 누리집) <https://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